

● 제283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9.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1)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2) 제출일자 : 2018년 8월 16일
- 3) 회부일자 : 2017년 8월 21일

## 2.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조 4,24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86억 원이 증액(1.2% 증가)되었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표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안(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율(%)
여성가족정책실(일반회계)	2,424,804	2,396,224	28,580	1.2%
행정운영경비	705	705	-	
재무활동	8,743	5,398	3,345	62.0%
사업비	2,415,356	2,390,121	25,235	1.1%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추경안의 개요

- 2018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은 2조 4,248억 415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62억 2,351만원에서 285억 8,065만원이 증액 편성(1.2%)되었음.

<표 2.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X772,216) 2,424,804	(X762,949) 2,396,224	(X9,267) 28,580	1.19%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286억 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0.8%에 해당함.

<표 3.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18년도 추경안(A)	'18년도 기정예산(B)	증감율(%)	증감 (A-B)
◇ 서울시총예산(a)	35,590,591	31,916,346	11.5	3,674,245
◇ 여성가족정책실(b)	2,424,804	2,396,224	1.2	28,580
※ 비중(b/a)(%)	6.8	7.5	-	0.8

## 2 추경안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하여, ① 법정의 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고, ② 안전구조 보강, 대기질, 일자리 처우개선 등 시급한 민생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총 17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함.

○ 총 17건 가운데 13건 사업은 증액 사업이며, 4건은 국비 보조금 감액분 만큼의 시비를 감액하는 사안임.

- 증액 1건의 경우, 일부 국비 보조금 감액분 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내용과 전액 시비 증액 내용이 함께 편성되어 있음.

<표 4. 부서별·사업별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유형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b>여성가족정책실(합계)</b>			(X762,949) 2,396,224	(X772,216) 2,424,804	(X9,267) 28,580	
<b>여성정책담당관(소계)</b>			<b>(X21,669)</b> <b>96,180</b>	<b>(X21,598)</b> <b>97,438</b>	<b>(X△71)</b> <b>1,258</b>	
1	복지	노숙인시설운영	(X2,141) 5,262	(X2,111) 5,202	(X△30) △60	<국비매칭> - 국:시=50:50 ○국고 변경 내시(감액)에 의한 국비 및 매칭시비 감액
2	복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X30) 60	(X45) 1,090	(X15) 1,030	<국비매칭> - 국:시=50:50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매칭시비 반영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외벽 교체(전액시비)
3	일자리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X1,751) 5,441	(X1,669) 5,277	(X△82) △164	<국비매칭> - 국:시=50:5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막달레나의 집) 폐지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감액(※운영주체 운영포기, 이용자 타시설 이관완료)

연번	유형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4	복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X402) 804	(X387) 774	(X△15) △30	<국비매칭> - 국:시=50:50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막달레나의 집) 폐지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감액
5	복지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786	886	100	<시 자체>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D등급, 안전미흡) 구조보강
6	복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X426) 1,926	(X465) 2,005	(X39) 79	<국비매칭> - 국:시=50:50 ◦ 통합상담소(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추가선정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증액
7	복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X1,735) 3,470	(X1,748) 3,496	(X13) 26	<국비매칭> - 국:시=50:50 ◦해바라기센터 2개소(동부, 남부) 부족운영비 확보를 위한 국비 및 매칭 시비 증액
8	복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해바라기센터 돌봄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X166) 332	(X155) 309	(X△11) △23	<국비매칭> - 국:시=50:50 ◦해바라기센터 4개소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인한 국비 및 매칭시비 감액
9	일자리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913	2,001	89	<시 자체>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쉼 자치구 24시간 확대시행에 따른 초급인력 3명 추가채용(※4조(4명) 3교대 24시간 운영)
10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	1,107	1,318	211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b>보육담당관(소계)</b>			<b>(X595,019) 1,878,824</b>	<b>(X604,162) 1,901,438</b>	<b>(X9,143) 22,614</b>	
11	일자리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X68,773) 204,556	(X74,949) 222,821	(X6,176) 18,265	<국비매칭>-국:시:구=30:49:21 ◦정부지원시설 인건비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163억) <구비매칭>-시:구=79:21 ◦정부미지원시설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편성(20억원)
12	일자리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X4,359) 41,053	(X7,088) 45,095	(X2,729) 4,042	<국비매칭>-국:시:구=20:40:40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국고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13	대기질	어린이집 기능보강	(X731) 1,096	(X968) 1,404	(X237) 308	<매칭>-국:시:구:자=50:15:15:20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 이용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한 정부추경, 국비 및 매칭시비 반영

연번	유형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b>가족담당관(소계)</b>			(X141,568) 395,465	(X141,763) 400,141	(X195) 4,676	
14	복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X1,006) 2,011	(X1,206) 2,411	(X200) 400	<b>&lt;국비매칭&gt; - 국:시=50:50</b> ◦ 아동보호치료시설(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생활관 및 직업훈련관 공사비 지원계획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반영
15	일자리	다함께 돌봄사업	(X30) 99	(X25) 1,273	(X△5) 1,174	<b>&lt;국비매칭&gt; - 국:시=30:70</b> ◦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산출내역 정정에 따른 국고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확보 ◦ 우리동네 키움센터(21개소) 리모델링비( <b>전액시비</b> 1,050백만원)
16	재무활동	반환금 및 기타	3,530	6,632	3,102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b>외국인다문화담당관(소계)</b>			(X4,665) 24,994	(X4,665) 25,027	33	
17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161	194	33	◦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3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 및 내역

○ 부서별 주요 추정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표.4> 참조), 우선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은 ‘노숙인시설운영’,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에서 12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분 증액(3건)이나 감액(4건)을 위한 것이며, 1건은 이전 연도('15~'17)에 미납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임.

- 아래 3건은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일부  
: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시공된 건물외벽 교체
-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사업비 전액  
: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D등급, 안전미흡) 구조보강 및 원예치료 공간조성
-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비 전액  
: 여성안심서비스 “안심이” 전 자치구 24시간 확대시행에 따른 초급인력 3명 추가채용

○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3건의 사업에서 226억 1,400만 원이 증액됨.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추가 확보를 위한 증액임.

-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전액  
: 정부지원시설 국비증액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정부미지원시설 신규개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확보

-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비 전액  
: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목적 등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비 전액: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확대

○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3건의 사업에서 총 46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2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건은 이전 연도(‘15~‘17)에 미납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임.

- 아래의 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액과 함께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사업’ 일부  
: 우리동네 키움센터(21개소) 리모델링비 및 인건비, 사업비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건(반환금 및 기타)은 이전 연도(‘15~‘17)에 미납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임.

1) '다함께 돌봄사업'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8년 상반기 4개 자치구(노원, 도봉, 마포, 성북구)에 설치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18년 하반기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다함께 돌봄사업 예산 산출 기준>

**우리동네키움센터 소요예산 기준(안)**

- 설치비 : 1,050,000천원 = 50,000천원 (개소당) × 21개소
- 인건비 : 99,183천원 = 4,723천원 (1개월) × 21개소
  - 관리자 : 59,997천원 = 1인 × 2,857천원 × 1월 × 21개소
  - 교사 : 39,186천원 = 2인 × 933천원 × 1월 × 21개소
- 운영비(교육 프로그램 등) : 29,400천원 = 1,400천원 (1개월) × 21개소
- ※ 관리자, 교사 인건비는 '18년 기준이며, '19년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지침에 의거 변동 가능
- ※ '19년부터 운영비는 구비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18년도 당초예산은 9,94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11억 7,370만 원이 증액(7.8% 증가)된, 12억 7,310만 원 임.

<표 6. '다함께 돌봄사업', '18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4,915) 1,273,098	(×29,800) 99,400	(×△4,885) 1,173,698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9,915) 173,098	(×14,800) 49,400	(×△4,885) 123,6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동네 키움센터 21개소 신규 설치·운영</li> <li>- 관리자 : 1명×2,857천원×1월×21개 59,997</li> <li>- 돌봄교사 : 2명×933천원×1월×21개 39,186</li> <li>- 프로그램 : 1,400천원×1월×21개 29,400</li> </ul>
자 치 단 체 자 본 보 조	(×15,000) 1,100,000	(×15,000) 50,000	(×-) 1,0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비 : 21개소×50,000천원 1,050,000</li> </ul>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앞서 제시하였듯이,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추경 사유에 대하여, “인건비 산출내역 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로 국비감액과 우리동네 키움센터(21개소) 신규 운영을 위한 조성비 및 인건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인건비 국비감액은 '18년 본예산으로 설치·운영 중인 노원구 우리동네키움센터1)의 설치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내 운영가능 기간이 줄어들어 해당 기간 만

1) 나머지 3개 자치구의 센터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으로 설치·운영된 것임

금의 운영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사실상 금번 추경의 주요증액 사유는 집행부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확대 정책인 초등돌봄을 위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려는 것임

-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개소당 설치비는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의 경우 1개월 분만을 반영한 것을 고려할 때, 연내 운영은 사실상 12월 한달로 추경을 통해 연내 설치·운영하는 것 보다는 '19년 본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와의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 수요조사 결과, 21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뿐

- 집행부는 추경예산안 편성 전에, 자치구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수요를 사전 조사한 바 있는데, 그 결과 11개 자치구 25개 시설이 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실제 추경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경우, 남은 3개월 동안 설치 수요가 없는 나머지 10개 자치구에 연내 예산 집행을 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7. 사전 수요조사 결과>

구분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송파구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계 (11개구)
신청 수요	3	1	4	1	3	2	3	1	2	4	1	25개소

## ◆ 현행 초등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 문제

- 현재 서울시에는 약 430개 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민 기초생활 급여 수급을 하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이 주 이용대상(80% 기준)이 되고 있음.
- 이용아동 기준에 제한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 문제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확대에 의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20%의 일반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할 경우,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수요가 감소하여 해당 시설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두 돌봄 주체 간의 공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위험 및 노후 아동복지시설의 증·개축을 통해 생활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하기 위한 것임.
- '18년도 동 사업의 당초예산은 20억 1,119만 원이고, 금번 추경에서는 4억 원이 증액한 20억 1,119만 원이 편성됨.

<표 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8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05,594) 2,411,188	(×1,005,594) 2,011,188	(×200,000) 400,000	
민 간 자 본 사 업 보 조 ( 이 전 재 원 )	(×1,164,344) 2,328,688	(×964,344) 1,928,688	(×200,000) 400,000	아동복지시설 생활관 신축공사
민 간 위 탁 사 업 비	(×41,250) 82,500	(×41,250) 82,500	(×-) -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금번 추경은 '아동보호치료시설(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 생활관 및 직업훈련관 공사비 지원계획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반영을 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59조를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5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매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점을 고려해 보면, 국비증액에 따른 추경 발생 사유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 국비 증액분에 대한 근거 부재로 인한 변동가능성 문제

- 통상적으로 국비 매칭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내시를 근거로 추진하게 되는데, 금번 추경에서 국비 증액분 20억 원이 계상된 데는,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이 기능보강비를 교부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결과임.
-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확보 될 것으로 예상한 국비 증액분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정부 추경안의 확정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유동적일 수 있음.
- 또한 예산사업설명서에서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살레시오센터에서 기능보강 지원을 원치 않아, '18년 8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살레시오센터 대신 돈보스코자립생활관으로 기능보강 대상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을 유선상으로 전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사업설명서가 배부된 이후, 변경된 사항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 있음.

## 3)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사업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가출 및 빈곤 등 취약계층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의료, 심리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십대여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전액 시비 사업으로, 마포구에 소재하는 ‘시립 청소년건강센터(나는봄)’운영을 통해 집행되는 건임.

- '18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7억 8,605만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1억 원이 증액 (12.7% 증가) 된 7억 8,605만원이 편성됨.

<표 9.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18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86,046	786,046	100,000	
민 간 위 탁 금	786,046	786,046	-	
민 간 위 탁 사 업 비	100,000	-	100,000	○ 지하주차장 구조물 철거 20,000 ○ 원예치료 공간조성 80,000

- 증액의 사유는, 지하주차장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자립훈련매장을 철거하고, 빈 공간을 십대여성 원예치료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 구체적 내용은 지하주차장 구조물 철거 예산 2,000만 원, 원예치료 공간조성 예산 8,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하려는 것임.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추경요건을 고려해볼 때, 동 사업에서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구조물 철거 예산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로 그 시급성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 구조물 철거 이후 빈 공간에 원예치료장을 조성하는 건의 경우, 장소 활용 방안 에 대한 면밀한 검토과정이 없이 단지 평소 '시립 청소년건강센터'에서 원예치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던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반드시 추

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사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예산의 경우, 일단 공간을 조성한 이후에는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운 매물 비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19년 본 예산에 장소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4)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구축, 여성안심택배 운영 등 여성안전대책 추진을 통하여 여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 사업임.
- '18년도 동 사업의 예산은 19억 1,260만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8,888만 원이 증액(4.7% 증가) 된 20억 148만원이 편성됨.

<표 1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18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001,477	1,912,602	88,875	
사 무 관 리 비	515,600	515,600	-	
공 공 운 영 비	272,587	183,712	88,875	◦ 안심이 운영
전 산 개 발 비	731,590	731,590	-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481,700	481,700	-	

- 증액의 사유는,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중 세부 사업인 ‘여성안심 서비스 「안심이」’ 사업이 전 자치구 24시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추가인력이 요구되어, 4조 3교대 근무방식에 따른 초급인력 3명 추가채용에 필요한 3개월 분 인건비 8,888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임.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안심이」 사업은 최초 “여성안심특별시 2.0 추진계획(여성정책담당관-5760, 2016.3.30.)에서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자치구별 집행을 하려던 것<sup>2)</sup>을, 서울시 직접 수행으로 전 자치구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24시 스마트 원스톱 안심망 「안심이」 확대(안), 여성정책담당관-12771, 2017.7.6.)하여 ‘전산 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는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여 5억 6,0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 '17년 5월 4개 자치구(성동, 은평, 서대문, 동작)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안심이」가 처음 개통된 이후, 자치구 개별 구축보다는 서울시 통합 구축이 비용 효율성 면이나, 유지·관리에 있어서 유리하고, 순차적 확대시 위치기반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전자치구 일괄구축·전면 확대하기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사용되었으며,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된 바 있음
- 즉 「안심이」 사업은 2016년 최초 계획부터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회계연도 시작 이후 반복적으로 계획변경 및 예산변경 등을 통해 사업

2) 16년 4개 자치구→17년 10개 자치구→18년 11개 자치구 안심망 구축

이 시행되고 있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  
 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5)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어린이집 보조 인력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하며, 구체  
 적 내용은 아래 <표 11>과 같음.

<표 11.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국비) 지원 내역별 주요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원부담	
대체 교사 지원	보육교사 및 교사 겸직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파견 (월1,852천원) 또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1일 73,700원)	국고보조사업 (국고 20%, 시비 80%)	
보조교사 지원	국고 보조	모든 어린이집	보조교사 : 월 832천원 지원 보육도우미 : 월 786천원 지원	국고보조사업 (국고 20%, 시비 40%, 구비 40%)
	시비 보조	모든 어린이집	보조교사 : 월 832천원 지원 보육도우미 : 월 786천원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40인 이상 서 울형을 제외한 어린이집에 1인 추가 지원가능(보조교사+보육도우미 형태)	시비보조 (시비 50%, 구비 50%)

- 동 사업의 '18년도 당초예산은 410억 5,317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40억 4,133이 증액(9.8% 증가)된, 450억 9,451만 원임.

<표 12.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8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088,000) 45,094,507	(×4,358,667) 41,053,174	(×2,729,333) 4,041,333	
민 간 단 체 법 정 운 영 비 보 조	(×1,432,000) 8,806,095	(×1,307,544) 8,681,639	(×124,456) 124,456	◦ 대체교사 증원
자 치 단 체 경 상 보 조 금	(×5,656,000) 36,288,412	(×3,051,123) 32,371,535	(×2,604,877) 3,916,877	◦ 보조교사 증원

- 증액의 사유는, 우선 대체교사와 관련하여 '18년 본예산 편성시 기준이 되었던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따라 294명 분이던 사업물량이, 확정내시(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18. 4.16)에서 318명 분으로 24명 분이 반영된 1억 2,446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 보조교사의 경우는 먼저 대체교사와 마찬가지로 국비 확정내시 변경(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 '18. 4.16)으로 1,022명 분이 증액되고,
- '18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에 따른 정부추경으로 국비 증액통보에 따라 보조교사 1천 명 분인 국비 6억 5,600만 원 및 매칭시비 13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임.

<표 13.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8년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당 초 예 산		변 경 (추 경)		추경편성
	지원기준	가내시	지원기준	확정내시	
2018	대체교사 292명	(×1,308) 8,682	대체교사 318명	(×1,432) 8,806	(×124) 124
			1인 단가 : 1,852천원		
	보조교사 1,528명	(×3,051) 32,372	보조교사 2,550명	(×5,000) 34,321	(×1,949) 1,949
	-		1인 단가 : 832천원		
	-	(×0)	보조교사 1,000명	(×656)	(×656)
	-	0	휴게시간보장 국비 증액 1인 단가 : 832천원	1,968	1,968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시비 미편성에 대한 고려필요

-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에 따른 국고 보조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추경이 편성된 점에서 이의 사유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됨.
- '보조교사' 지원 사업의 경우도 국비 증액에 따라 추경이 편성되었고, 휴게시간 보장이라는 제도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이라는 점에서 추경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동 사업은

'12년부터<sup>3)</sup>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16년부터는 동일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대된 것임. '18년 현재 '보조교사 지원'은 행정처분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어린이집을 제외한 서울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1명 이상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표 14.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추진실적 >

(단위 : 개소, '18년 5월말 기준)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사회복지	부모협동	
계		6,269	1,271	1,652	3,146	81	68	17	34
보조교사	합 계	4,095	1,101	980	1,865	65	49	12	23
	국 비	2,095	59	670	1,350	5	9	-	2
	시 비	2,000	1,042	310	515	60	40	12	21
보육도우미		2,174	170	672	1,281	16	19	5	11

-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되었고 휴게시간 부여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되면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된 것임.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조교사 지원대상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3개 이상 운영에서 2개 이상 운영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발표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대상이 되는 보조교사 1천명 분에 대한 4개월치 인건비 증액분 19억 6,800만원이 편성된 것임.

3)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오던 '비담임교사'는 2012년부터, '보육도우미'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해왔음.

○ 그런데 서울시에서 '18년 5월 기준으로 산출한 보조교사 필요인원은 1,566명으로 추경으로 확보될 1천 명을 제외하면 약 566명의 보조교사가 부족한 것으로, 이를 위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재의 한정적인 인력풀에서 보조교사 1천 명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동시에 국:시:구비 매칭(2:4:4)으로 자치구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사업집행에 있어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보조교사 추가확보 관련>

<input type="checkbox"/> 보조교사 이용 현황(DW 보육통계 '18.5월 현재 기준)	
구 분	인원 (단위:명)
일반 보조교사	4,284
누리과정 보조교사(30시간 이상)	634
누리과정 보조교사(30시간 미만)	1,126
<b>총 계</b>	<b>6,044</b>
<p>○ 현재 DW기준 서울시 담임 보육교직원이 총 30,440명이며, 보조교사 근무시간 4시간으로 정교사 4명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시, ▶ <math>30,440 \text{명} \div 4 \text{시간} = \text{총 } 7,610 \text{명}</math> 보조교사가 필요</p> <p>○ 따라서 기 확보된 보조교사 6,044명을 제외하고 <b>추가로 1,566명 확보 필요</b></p>	
<input type="checkbox"/> 보조교사 추가확보 예산 산출내역	
<p>○ <b>추가확보가 필요한 예산 : 총 52억</b></p> <p>▶ <math>1,566 \text{명} \times 4 \text{개월} \times 832,000 \text{원} = 5,211,648 \text{천원}</math></p> <p>▶ <u>국비 10억원, 시비 21억원 확보 필요(20:40:40, 구비별도)</u></p>	

## 6)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15>와 같이 '18년 7월말 현재까지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음. 2018년도 3/4 분기가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15.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 30%이하 사업현황 ('18년 7월말 현재)>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집행 율	불용사유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13,706,200	679,881	13,026,31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이스살림포럼 '18.9월 계약예정으로 연내집행완료예정</li> <li>○ 공사비 1차용역 준공금 포함 4,113백만원 '18.10월까지 집행완료예정이며, 2차공사계약등으로 '18.10월 중 7,865백만원 원인행위 예정</li> <li>○ 감리용역 1차수 준공금 349백만원 '18.10월 집행예정이며, 2차수 감리비 560백만원은 '18.10월 원인행위 예정</li> </ul>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구 성주류화 정책 추진 및 젠더거버넌스 운영)	118,000	30,000	88,00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시기 미도래(성인지 통계 학술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하반기 비용 집행 예정이며 하반기 홍보물 성별영향분석 평가사례집 제작으로 전액 사용 예정)</li> </ul>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율	불용사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 활성화	192,300	40,500	151,800	21%	○ 성평등위원회,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3기 구성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
성매매 예방사업 활성화	44,858	12,392	32,466	28%	○ 직원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및 간담회 등 하반기 실시 예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여성폭력관련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26,800	0	26,800	0%	○ 18년 11월 보수교육 완료후 26,800천원 집행 예정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120,000	15,000	105,000	13%	○ 8월 중 40백만원 집행하였고 (46%) 하반기 전액 집행 예정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000	0	20,000	0%	○ 하반기 행사계획에 따라 하반기 집행예정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574,112	26,225	547,887	5%	○ 하반기 공모전 및 행사 등이 진행됨에 따른 불용
아동수당 지원	143,010,632	1,861,078	141,149,554	1%	○ 아동수당 9월 21일 첫 지급으로 8월부터 자치구 예산교부 예정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4,125,000	287,704	3,837,296	7%	○ 연간 단가 계약으로 월별 소요량에 따라 지급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011,188	367,900	1,643,288	18%	○ 자치구 예산재배정으로 시설별 사업추진중이며 하반기 집행예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우수 지역아동센터	967,680	0	967,680	0%	○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침(지원기준 등) 미시달로 미집행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105,000	11,000	94,000	10%	○ 커뮤니티 행사 20개 중 17개 하반기 개최 예정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180,000	0	180,000	0%	○ 타당성조사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 5 종합 의견

- 이상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금번 ‘2018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주로 범정의무 경비 및 범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에 대한 그 불가피성은 대체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 사안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첫째, 금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반영한 시비 반영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시비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와 국고보조금의 미확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시비 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이나 지원 내용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추경안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건들은 '19년 본 예산안을 통해 시의회의 엄격한 예산심사를 거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셋째, 금번 추경을 통하여 신규편성된 시비사업 (예시.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계획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구됨.